

제 호

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제작을 명합니다.

업체명	대표자 성명			
본사 소재지	본사 전화번호			
공장 소재지	공장 전화번호			

품 목	규 격	단 위	수 량	기 간

년 월 일

기 관 장 명 의인